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1995.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증가되는 행정수요 및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정무 부시장을 두고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로 함.(안 제1조)
- 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 정무 부시장을 둠.(안 제2조 제1항)
- 다.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과 시소속공무원 지도감독 사무를 분장하고,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시정 홍보, 시장의 활동상소개,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사회단체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분장함.(안 제2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 :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를 2인이상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12.20>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 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94·3·16>

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9조(부시장·부지사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으로 한다.

②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 제10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부부시장” 또는 “정부부지사” 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부부시장·정부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행정부시장을 2인 두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행정(1)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산업경제·문화관광·민방위 및 소방업무를 행정(2)부시장은 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 및 상하수 업무를 분장한다.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로 하고 “실·국·본부”를 “부시장과 실·국·본부”로 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를 “제3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부시장)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

②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부시장

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시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2. 정무부시장

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다.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라.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 마. 정부·국회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바. 정당·사회단체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조례는 <u>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장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두는 실·국·본부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u> ----- ----- <u>부시장과</u> <u>실·국·본부등의</u> ----- -----</p> <p>제2조(부시장)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p> <p>②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행정부시장</p> <p>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p> <p>나. 시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p> <p>2. 정무부시장</p> <p>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p> <p>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p> <p>다.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p> <p>라.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p> <p>마. 정부·국회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p> <p>바. 정당·사회단체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p> <p>사.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2조(실·국·본부설치) 생략</p>	<p>제3조(실·국·본부설치) 연행과 같음</p>	